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김제리 의원 외 31명

나. 의안번호 : 제807호

다. 발의일자 : 2019. 8. 2

라. 회부일자 : 2019. 8. 13

2. 제 안 사 유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고 인체 유해성이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 기관 설립을 요구하였고 이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내 미세먼지 연구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세먼지 연구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바,

조례에 미세먼지 연구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연구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신설)
- 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등의 발생원 조사, 발생원인 측정 및 분석, 정책 제안 등 미세먼지 연구소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 다.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에 대한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4. 참 고 사 항

- 가. 관련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내 미세먼지 연구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세먼지 연구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바, 조례에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역할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연구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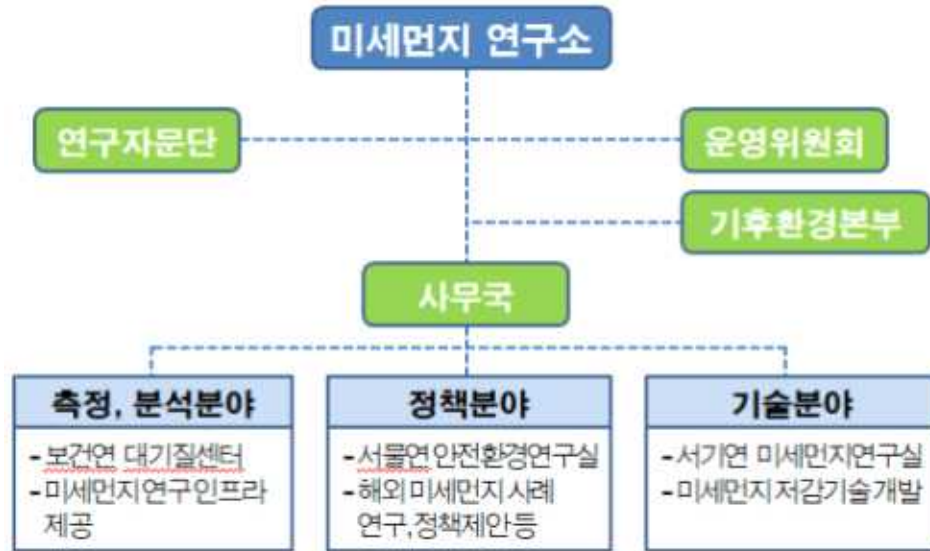
1) 현황

- 그동안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립적·산발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연구원간 유기적 연계 기능 및 융합형 연구체계가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총괄·전담 기구, 미세먼지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서울연구원 : 정책 분석 및 제언
- 서울기술연구원 : 신기술 연구 등 기술 전반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대기질 측정 및 모델링

이에 미세먼지 연구소 조직 구성, 연구 협업 방안, 설립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5월 20일 미세먼지 연구소를 출범한 바 있음.

- 현재 미세먼지 연구소 사무국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우선 운영하고 있고 이후 조례를 근거로 각 연구원에서 2년씩 순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음.



〈미세먼지 연구소 조직 현황〉

2)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운영, 역할 등의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지난 5월 20일 미세먼지 연구소가 출범되어 우선 집중과제를 선정, 시정 현안과제와 병행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¹⁾ 하고 있지만, 조례에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미세먼지 연구소 설치 및 운영 근거,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또한, 안 제13조제3항과 같이 시 소속 공무원과 출연기관에 대해 파견 또는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연구소 인력 운용의 융통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년 예산안은 41억 3천2백만원을 추계하고 있음(미세먼지 연구소가 기설치·운영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동 조례안에 따른 비용발생은 아님)